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4,141,266	31,024,238
일반회계	1,003,616,779	30,108,503
특별회계	30,524,487	915,735
기타특별회계	30,524,487	915,73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28,734	132,862
수질개선특별회계	452,079	13,562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45,455	112,3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42,000	1,260
주택사업특별회계	3,110,251	93,308
농공단지특별회계	4,454,716	133,641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91,000	2,73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52,707	76,58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8,000	1,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90,000	41,700
도시개발특별회계	4,575,000	137,2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5,634,545	169,03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36,1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